

# 강원관광대학 학생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강원관광대학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중견 기술인이자 참된 실천 봉사인으로서의 학문적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고 지도자로서의 학생 자치활동을 구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 본회는 강원관광대학 내에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단, 휴학 중에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한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재정, 그 밖의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 6 조 (금지활동)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7 조 (효력정지) 본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8 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회원들간의 진로 대책 지원 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취미, 친목 등의 학생자치활동

제 9 조 (기구) 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학생회,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를 두고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 제 2 장 총 학 생 회

제 10 조 (구성) 본 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정·부회장의 선출)

1. 정·부 학생회장의 선출은 선거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로 학생회장이 선임한다.
3. 정·부 학생회장 및 각 부서의 장의 탄핵, 자퇴, 제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위 2항에 의거 선임한다.

제 12 조 (임기) 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는 1년(단 총학생회장 당선일로부터 익년도 총학생회장 당선 일로부터 7일 후까지)으로 한다.

제 13 조 (직무)

1. 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총 학생회의 각 부서를 총괄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대의원회의 소집, 출석 및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4. 부 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무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부서를 두며 관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본회의 사무관리, 회계업무 및 기타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기획부: 본회의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3. 학술부: 학술, 예술,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4. 사회복지부: 각종 봉사활동 등 사회 문화 분야의 회무를 담당한다.
5.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6. 홍보·섭외부: 학교 및 총학생회에 관한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7. 여학생부: 여학생의 학내 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5 조 (기능) 총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의 작성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및 기타 필요한 부서는 총 학생회장이 능률적인 업무를 위하여 신설, 조정 할 수 있다.

#### 제 16 조 (의결)

1.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7 조 (회의) 총학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 학생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 학생회장이 총대 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 18 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2. 회비는 학생지원처장 감독 하에 관리하고, 수납은 행정지원처에서 하며 지출은 학생지원처에서 관장한다.

#### 제 19 조 (예산편성)

1. 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완료하여 총학생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학생회장은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예산 수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20 조 (결산) 학생회장은 결산보고서를 매 학기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결산보고서를 심의하고 이를 총학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1 조 (감사)

1. 대의원회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3 장 대의원회

제 22 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하“본회”라 칭한다)이다.

제 23 조 (구성)

1. 본회는 전학과 학년별 대표 각 1인으로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성된다.
2.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24 조 (임기)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회 구성일로부터 익년도 대의원회 선출일로부터 7일 후까지로 한다.

제 25 조 (임원선출)

1. 대의원은 매 학년도 총학생회장선거 직후에 선출한다.
2.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득표에 의한다.
3.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4. 의장, 부의장, 간사가 선출되어 공석에 있는 대의원 의석은 임원으로 선출된 학과별로 재선출한다.
5. 임원선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표록은 의장직인 날인 후,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임원의 지위)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연도 예산심의 및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2. 회비 책정에 관한 의결권 및 회비 심의 의결권
3. 예산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및 심의 의결권
5. 집행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6. 총 학생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7. 집행위원의 출석 요구권
8. 감사 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또는 방해하거나 제 7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학교당국에 징계요구권

9.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제 28 조 (회의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9 조 (의 결) 대의원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0 조 (불신임 결의)

1. 대의원은 학생 정·부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2.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학생 정·부회장은 즉시 사임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 및 각 부서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재정) 대의원회의 경비는 총학생회와의 예산편성 심의를 거쳐 심의 완료된 예산을 경비로 책정하며, 대의원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제 4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32 조 (목적) 이 규정은 총학생회 정·부의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의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둔다.

제 33 조 (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34 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입후보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상황이 양호한자.

5. 대의원 사퇴 후 1개월이 경과된 자.

제 35 조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

1.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은 입후보 2인 1조(런닝메이트)가 되어 전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단, 한과에서 정·부가 나올 수 없다.)
2.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하고 총투표자 70% 이상 득표해야 당선으로 결정한다. (단, 투표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관위와 학생 지도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36 조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제 37 조 (임기)

1.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꺾일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38 조 (선출시기) 총학생회 정·부회장은 매 학년도 10월말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된 후 최 단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며, 대의원회 운영예산에 책정되어야 한다.

제 40 조 (구성)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2. 선관위는 대의원회에서 선거실시 30일 전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의장이 된다.
3. 선관위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해체해야 한다.
4. 선관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41 조 (직무)

1. 선거일시 결정공고
2.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 42 조 (입후보자 등록)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원서에 아래 각 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정·부회장 동반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2. 선거권자(100인 이상) 추천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3. 서약서 1부(별지 제 3호 서식)
4. 재학증명서 각 1부
5. 성적증명서 각 1부
6.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 1부

제 43 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2. 입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를 갖는다.
3.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및 당선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44 조 (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장이 투표일 30일전에 공고한다.

제 45 조 (투표 및 개표)

1.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한다.
2. 선거권자는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투표한다.
3. 투표소 내에는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4. 투표시간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5. 투·개표는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개표 시에는 학생지원처장 등 교수 1인 등이 참관한다.  
(단, 투·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제 46 조 (당선인)

1. 선관위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 7일 이내에 재투표한다. 재투표 후 다시 동일할 경우 학생회장은 (1)연장 (2)성적순으로 당선 공고한다.

제 47 조 (참관인) 각 입후보자의 참관인은 각 투표장에 2인씩 입회시킬 수 있다.

제 48 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2.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투표 용지에 필요한 표식 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제 49 조 (당선무효) 선관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 50 조 (이의 제기)

1.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선관위에 제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관위는 재적의원 2/3이상의 결의로 그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 51 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가 결정된 경우
2. 당선인 임기 개시전이나 만료되기 전 탄핵, 자퇴, 제적 또는 사망할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관위원 및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52 조 (기타)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투표록은 선관위원장 직인 날인 후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할 수 있다.

## 제 5 장 졸업준비위원회

제 53 조 (목적)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의한 졸업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산하에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칭한다)를 둔다.

제 54 조 (구성) 1. 본 졸준위는 총학생회 임원들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부장 1명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 학회장이 위원이 된다.

제 55 조 (선출시기) 매 학기 2월에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은 매 학기 4월말에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6 조 (선출방법) 총학생회 임원들의 추대로 결정하며, 본 위원회가 조성되기 이전까지의 졸업 준비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57 조 (임기) 졸업준위 임원들의 임기는 익년도 총학생회 구성일 까지로 한다.

제 58 조 (기능 및 업무) 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관장하여 집행한다.

가. 앨범 제작업체 체결에 관한 사항

나. 앨범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졸업비 책정 및 졸업 기념품에 관한 사항

라. 사은회에 관한 사항

마. 동창회 사업협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졸업 준비에 관한 사항

2. 졸업 준비에 관한 업무의 의결은 본 위원회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졸업 준비비 책정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전년도에 준 하는 준비비를 책정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본 위원회가 제 1항의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결과를 서면으로 학생지원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재정) 본 위원회의 경비는 졸업예정 학생들의 졸업 준비금으로 운영하며,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외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 60 조 (앨범제작 계약) 1. 앨범제작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본 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신청하면 그 업체와의 계약은 익년도로 자동 승계된다.)

3. 앨범제작 계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며, 그 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 6 장 동아리 연합회

제 61 조 (목적) 본 규정은 강원관광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에 속하는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개개인의 자율적인 참여로서 개인적인 흥미와 취미, 창의적인 정신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62 조 (자격) 각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에 속하고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 63 조 (구성)

1. 각 동아리 단체는 동아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동아리 연합회는 회장, 총무, 각 동아리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4 조 (회장선출)

1. 동아리연합회장의 선출은 연합회원들의 추대에 의하며 각 동아리 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2. 동아리 연합회의 총무는 연합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 65 조 (임기) 동아리 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선확정 일로부터 익년도 동아리연합회장 선출일 까지로 한다.

제 66 조 (단체조직 및 등록요건)

1. 동아리 연합회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술연구 활동
  - 나. 예술, 레저·체육, 문화활동
  - 다. 각종 봉사활동
  - 라. 종교활동
  - 마. 기타 취미·정서함양을 위한 친목활동
2.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학칙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단체조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 나.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 설립 목적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하며 활동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 되는 동아리는 최대한 통합한다.
  - 라.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 1인 이상을 추대하여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7 조 (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신규, 재등록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도 3월 31일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처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8 조 (등록 시 구비서류)동아리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연합회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2. 지도교수 승인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3. 회원명부 1부(별지 제 3호 서식)
4. 입회원서 1부(별지 제 4호 서식)
5. 전년도 활동보고서 및 결산서 1부(별지 제 5호 서식)

6. 금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1부(별지 제 6호 서식)
7. 서약서 1부(별지 제 7호 서식)
8. 회칙 1부.

제 69 조 (등록승인)

1. 학생지원처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승인한다.
2. 승인된 회칙, 지도교수, 대표학생의 변경이 있을 시는 3일 이내에 동아리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아리 연합회장은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 70 조 (활동기간 및 범위)

1. 등록이 승인된 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71 조 (지도교수)

1. 지도교수는 각 동아리가 추대한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는 1개 이상의 동아리를 담당할 수 없으며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제 72 조 (비승인 및 해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등록된 동아리일지라도 학장은 이를 해체할 수 있다.

1. 제 1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단체
2.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3.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단체
4.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5. 운영상 재정 능력이 없는 단체
6. 정치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7.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단체
8. 등록신청 마감일 내에 등록신청을 필하지 아니하고 첨부서류가 미비한 단체(재등록 포함)
9. 동아리방 사용규칙을 위반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단체
10. 기타 학생활동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

제 73 조 (동아리방 배정) 동아리방 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생지원처에 있으며,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 동아리 대표자들은 동아리방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지원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본교 교직원들은 동아리방 배정과 관련하여 간섭할 수 없다.  
(단,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방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동아리방 배정은 재등록 단체 및 동아리방 활동실적이 우수한 동아리를 우선 순위로 배정한다.
4. 창업 동아리 및 활동이 지속적이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아리는 그 동아리 방을 존속시킬 수 있다.
5. 배정된 동아리방에 대해 본교 교직원 및 각 동아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4 조 (공고) 동아리 단체의 승인 및 동아리방 배정에 관하여 학생지원처는 심의 확정 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5 조 (동아리방 사용) 각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부터 학생지원처에서 동아리방 키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76 조 (동아리방 사용규칙) 동아리방 사용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제정하며 동아리방 입구 및 내실에 게시한다.

제 77 조 (징계 및 동아리단체 해체) 동아리방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위를 실시하여 적발될 시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 회의를 통하여 그 단체 및 학생에게 징계 및 단체 해체를 명할 수 있다.

1. 동아리방 내에서 취사, 임의기숙, 기물파손,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의 풍기문란을 행하는 자 및 단체
2. 동아리방 내에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자 및 단체
3. 동아리방 내에서 음주, 변태행위, 등을 행한 자 및 단체
4. 동아리방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가한 자 및 단체(학칙 제 9장을 준용하여 처벌)
5. 기타 학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및 단체
6.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 내용에 대한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8 조 (간행물 발간 및 허가) 순수학술 이외의 간행물은 일체 발간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유인물 및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규정 제 13조를 준용한다.

제 79 조 (집회 및 행사) 학내, 외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반드시 실시 5일전까지 학생

행사 허가원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실시 결과를 당해 집회의 장이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0 조 (재정)

1. 동아리 연합회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아리 연합회 예산은 학생회비 예산 편성 내역에 책정되어야 하며 총학생회장은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내역을 참조하여 일정 금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 81 조 (기타)

1. 등록이 허가된 단체가 해체될 시는 지도교수가 6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장에게 해체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학생지원처에서 각 동아리 단체의 활동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동아리 연합회장은 문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단체는 해체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동아리방 키를 학생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제반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회칙개정

제 82 조 (회칙개정) 회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 총학생 회원 발의의 경우 : 재적회원 1/10 이상요구시 정·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학생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 발의의 경우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학생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 발의의 경우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학생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발의된 내용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생지도위원회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에는 제 27조를 준용한다.
6. 학생회칙 개정 시 총학생회장은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200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정관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부서 명칭 변경은 본 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동아리방 사용규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는 인격도야의 장으로서 학생활동에 필요한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권한) 학생지원처장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지도하고 감독한다.
- 제 3 조 (구분) 본 시설물을 동아리방으로 구분한다.
- 제 4 조 (운영) 학생 시설물 관리책임과 업무 관장은 학생지원처에서 전담하며 질서유지, 보안 등을 담당 운영한다.
- 제 5 조 (점검) 학생지도 담당자는 학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제 6 조 (동아리방 사용) 학생은 학생 본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 제 7 조 (자격)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상은 본교 학생에 한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이 교육의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조 (변조 및 변상) 시설물과 비품, 실내장치 기구 등을 학생지원처장의 허가 없이는 변조할 수 없으며, 이를 변조, 파손, 망실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 9 조 (사용허가) 시설물 내 비품을 반출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하게 비품을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0 조(시설물 보수)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1 조(금지행위) 1. 시설물 내에서 취사, 임의 기숙, 음주, 고성방가, 소란행위 및 시설물 파괴, 성추행, 성폭행 등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난방기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지원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징계)

1. 제 11조 1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동아리 단체의 회장에게 있으며, 본 시설물을 사용하는 단체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학생의 고의, 과실에 대한 사고 발생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 학생지원처장의 허가 없이 금지행위를 하거나,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성폭행을 자행한 경우 등은 학칙 및 학생지도규정을 준용 학생지도위원회의를 통해 중징계 및 변상에 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등 록 원 서

총학생회장 후보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총 학생 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총 학생 회 부 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첨부 :

1. 선거권자 추천서(100인)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학과장 추천서 1부(별지 제4,5호 서식)
4. 재학증명서 각 1부
5. 성적증명서 각 1부
6.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 1부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총학생회장 후보자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상기 본인은 총학생회 선거 투표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타 후보를 비난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학생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 학과장 추천서

학 과 :	성 명 :
학 번 :	생년월일 :
직전학기 성적 :	처 별 : 없음, 근신, 유기, 무기

상기 학생을 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 학과장 추천서

학 과 :	성 명 :
학 번 :	생년월일 :
직전학기 성적 :	처 별 : 없음, 근신, 유기, 무기

상기 학생을 학년도 총학생회 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사퇴 신고서

총학생회장 후보자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있어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총학생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신청인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사퇴 사유서

총학생회장 후보자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사퇴사유 :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후보 사퇴공고

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년 월 일자로 사퇴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총학생회장 후보자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자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0호 서식>

##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기호		번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학	과 :	학	과 :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참관인 명단

학	과	학	번	성	명

위와 같이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 호 번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인)

후보자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 투 표 록

투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투표장소		
투표현황	유권자수	명
	투표자수	명
	기권자수	명
투표용지 교부현황	수령매수	명
	교부매수	명
	잔여매수	명
참관인	(인)	(인)
	(인)	(인)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2호 서식>

## 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개표록

개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개표장소					
투표합수	개				
투표상황	총유권자수				명
	총투표자수				명
	기권자수				명
	투표율				%
총투표수	표	유효투표수	표	무효투표수	표
개표상황	기호1	정회장후보		득표수	표
		부회장후보			
	기호2	정회장후보		득표수	표
		부회장후보			
기호3	정회장후보		득표수	표	
	부회장후보				
기호4	정회장후보		득표수	표	
	부회장후보				
당선자	기호	정회장		부회장	
<p>이 개표록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선거관리위원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원장</p> <p>위원</p> <p>위원</p> <p>위원</p> <p>위원</p> <p>위원</p> <p>위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p> <p>(인)</p> <p>(인)</p> <p>(인)</p> <p>(인)</p> <p>(인)</p> <p>(인)</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p>					

<별지 제13호 서식>

## 당 선 인 공 고

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당선인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당선자 명단 >-----

구 분	학과	학번	성명
회 장			
부회장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 학생지원처장

○  ○	NO _____	강원관광대학 총학생회 정·부회장 찬반투표	투표용지				NO _____
			총학생회 정·부회장 찬반투표				
			후보자		투표란		
					찬성	반대	
기 호 1			정회장후보				
			부회장후보				
			일사:    년    월    일( ) 00:00~00:00, 장소: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	NO _____	강원관광대학 총학생회 정·부회장 찬반투표	투표용지				NO _____
			총학생회 정·부회장 찬반투표				
			후보자		투표란		
					찬성	반대	
기 호 2			정회장후보				
			부회장후보				
			일사:    년    월    일( ) 00:00~00:00, 장소: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 서식>

## 앨범제작 계약서

▶ 앨범 단 가 :

▶ 학사모 액자 :

제 1조 (총칙) 20 년 월에 졸업하는 강원관광대학생의 앨범제작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강원관광대학 졸업준비위원회를 “갑” ,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계약의 목적) 앨범제작을 함에 있어 “을” 은 “갑” 이 제시하는 원고 또는 각종 필요한 필름 등 “갑” 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작하고 “갑” 은 “을” 이 앨범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한 앨범을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계약기간) 앨범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원고마감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또한 “갑” 이 “을” 에게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제 4 조 (사진촬영방법) 학생의 개인촬영은 “을” 의 사진관에서 하고, 기타 학교 내 행사 및 단체사진은 학생과 학교의 요청에 따라 출장 촬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 은 “을” 이 앨범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갑” 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 ”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 (교정 및 기간) 원고의 교정은 수시로 하되 원고 마감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앨범 납품기일) 앨범의 납품일자는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 은 앨범제작 원고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 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대금결제방법) 대금결제방법은 “갑” 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① “갑” 과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2. “을” 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 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4. 사망, 질병, 실종,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과 “을” 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 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행지체) 본 앨범제작에 있어 “을” 은 하자발생 및 앨범제작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 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 에게 통지해야 하며 전적으로 “을” 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앨범제작을 위하여 “갑” 과 “을” 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앨범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0 조 (계약체결) “갑” 과 “을” 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앨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439번지

성 명 : 강원관광대학 졸업준비위원회

“을”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앨범제작에 있어 “을” 은 인쇄지, 페이지 수량을 전년도 앨범과 비교하여 제작하고, 앨범 수량 및 인쇄상태에 있어 부수에 상관없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을” 이 그 책임을 진다.

## 학년도 동아리연합회 등록 신청서

소 속					
단 체 명					
활동목적					
회 원 수	남 자 : 명	여 자 : 명	계 : 명	등록별	신규등록 · 재등록
<p>본 단체는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치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도교수 승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li> <li>2. 회원명부 1부(별지 제3호 서식)</li> <li>3. 입회원서 1부(별지 제4호 서식)</li> <li>4. 전년도 활동보고서 및 결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li> <li>5. 금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1부(별지 제6호 서식)</li> <li>6.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서식)</li> <li>7. 회칙 1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대 표 자                      (인)                      (학과:                      )</p> <p style="margin-top: 5px;">지도교수                      (인)                      (학과:                      )</p>					

<별지 제17호 서식>

## 지도교수 승인서

동아리명		직 위	
소 속		성 명	
회원 수	남 명, 여 명, 계 명		

본인은 \_\_\_\_\_ 학년도 \_\_\_\_\_ 동아리의 활동 목적 및 활동내용을 인정하고, 제반집회 및 행사에 관하여 지도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소속: )



<별지 제19호 서식>

# 입 회 원 서

학 인 란	지도교수



학 과 :  
학 번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동아리에 입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2호 서식>

## 서 약 서

강원관광대학 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_\_\_\_\_

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학풍을 쇄신하고 학칙 및 규칙을 이행한다.
2. 회원 개인의 자기성장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학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3. 학칙 및 제반규칙의 위배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기꺼이 감수한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학과: )

<별지 제23호 서식>

제 - 호

## 동아리 승인서

동아리명 :

상기 동아리를 학년도 우리대학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관 광 대 학 장

<별지 제24호 서식>

제 - 차		총학생회장		학생지원처장			
총 학생 회 회의록							
		년	월	시	장소	기	록
일							
시							
안							
건							
회							
의							
내							
용							
결							
의							
사							
항							
위							
원							
인							

<별지 제25호 서식>

제 - 차		대의원의장		학생지원처장	
대의원회 회의록					
일시	년 월 시	장소		기록자	
안건					
회의내용					
결의사항					
위원인					

<별지 제26호 서식>

제 - 차				선관위원장		학생지원처장	
<b>선 관 위 회 의 록</b>							
일시	년	월	시	장소		기록자	
안전							
회 의 내 용							
결 의 사 항							
위 원 인							

<별지 제27호 서식>

제 - 차		졸준위원장		학생지원처장	
<h1 style="text-align: center;">졸준위 회의록</h1>					
일시	년 월 시	장소		기록자	
안건					
회의내용					
결의사항					
위원인					

<별지 제28호 서식>

제 - 차		동연합회장		학생지원처장	
동 연합 회의록					
일시	년 월 시	장소		기록자	
안건					
회의내용					
결의사항					
위원인					

<별지 제29호 서식>

제 - 호

## 임명장

학 과 :

성 명 :

위 학생을 학년도 강원관광대학 총학생회 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장

<별지 제30호 서식>

제        -        호

# 임명장

학    과    :

성    명    :

위 학생을        학년도 강원관광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장

<별지 제31호 서식>

제 - 호

# 임명장

학 과 :

성 명 :

위 학생을 학년도 강원관광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장

<별지 제32호 서식>

제 - 호

# 임명장

학 과 :

성 명 :

위 학생을 학년도 강원관광대학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장

<별지 제33호 서식>

제 - 호

# 임명장

학 과 :

성 명 :

위 학생을 학년도 강원관광대학 동아리연합회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강원관광대학장